

보도자료

2010년 4월 2일(금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문의 :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 과장(☎750-2530)
 통신경쟁정책과 김미정 사무관(☎750-2538)

'09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

- 통신감청은 감소하였으며

- 통계방식의 차이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증가

-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86개, 별정통신사업자 31개, 부가통신사업자 46개 등 총 163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여 '09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.
- 통신감청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는 7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.8% 증가했으나 전화번호 수는 3,095건으로 8.4% 감소하였으며,
-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 28만 2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.2% 증가, 전화번호 수는 344만 9,890건으로 31.4% 증가하였다.

< '09 하반기 통신감청·통신자료 제공 현황 >

구 분		검 찰	경 찰	국정원	군수사기관	합 계(전년동기대비)	
통신 감청	'08 하반기	문서건수	12	43	481	8	544
		전화번호수	16	50	3,304	9	3,379
	'09 하반기	문서건수	0	84	614	19	717 (31.8)
		전화번호수	0	90	2,984	21	3,095 (-8.4)
통신 자료	'08 하반기	문서건수	44,071	173,401	3,816	22,046	243,334
		전화번호수	506,094	1,963,026	25,424	131,027	2,625,571
	'09 하반기	문서건수	40,561	209,627	4,903	25,155	280,246 (15.2)
		전화번호수	494,574	2,615,770	35,777	303,769	3,449,890 (31.4)

-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건수 12만 2,1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.8% 증가하였다. 전화번호 수는 1,577만 8,887건으로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 이는 통계집계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
- 종전의 집계방식에 따를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 '09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>

구 분		검 찰	경 찰	국정원	군수사기관 등	합 계 (전년동기대비)
'08 하반기	문서건수	21,571	82,059	550	6,081	110,261
	전화번호수	55,816	167,147	1,828	11,991	236,782
'09 하반기	문서건수	19,780	96,131	768	5,502	122,181 (10.8%)
	전화번호수	50,917	14,366,747	2,727	1,358,496	15,778,887 (6,563.9%)

※‘통신사실확인자료’ : 가입자의 통화일시·상대방 전화번호·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로,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제시하고 자료를 제공받게 됨

□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전화번호 제공건수가 급증한 것은, 일부 법원이 기지국 단위 통신사실확인을 위해 종전 형사소송법상 ‘압수수색영장’을 발부하던 것을 통신비밀보호법상 ‘통신사실확인허가서’로 대체한 것이 원인이다.

○ 그동안 수사기관이 기지국 단위의 통신사실을 확인(기지국 수사)하는 경우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으며, 이는 통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방통위 통계로는 집계하지 않아 왔다.

○ 그러나, 통비법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에 의한 경우 방통위가 집계하게 되고, 특히 통비법은 문서건수 뿐 아니라 전화번호 수도 동시에 집계토록 하고 있다.

- 따라서,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하므로, 기지국 수사를 위해 허가서를 발부하는 경우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통계상으로 집계된다.

- 수사기관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사실확인허가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동일하며,
 - 또한, 기지국 단위로 제공받은 전화번호 중 수사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1~2개 전화번호만을 추출,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.
- ※ 통신사실확인허가서는 일반적 허가서와 기지국 수사 목적의 허가서가 있으며,
 - 이 중 기지국 수사 목적의 허가서는 '09년 하반기 1,257건으로 전체 통신사실확인허가서 122,181건의 1%에 불과하나, 제공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1,544만건으로 전체 전화번호 수 1,578만건의 97.8%를 차지

<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사실확인허가서 비교 >

구분	기지국 수사목적 압수수색영장	통신사실확인허가서	
		일반적 허가서	기지국 수사 허가서
통비법상 통계포함여부	불포함	포함	포함
통계집계방식	요청 문서당 1건	·요청문서당 1건 ·발신 전화번호 수 (특정번호 1~3건)	·요청문서당 1건 ·발신 전화번호 수 (허가서별 1만건 이상)
통계집계결과 ('09.하반기)	- (법원에서 전체영장 통계만 집계)	허가서 120,924건 × 전화번호 2.8건 = 전화번호 34만건	허가서 1,257건 × 전화번호 12,000건 = 전화번호 1,544만건

- 방송통신위원회는 '09년 하반기 통계 집계과정에서 일부 사업자가 제출한 전화번호 수 협조건수가 급증함에 따라,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기지국 수사시 영장에서 허가서 방식으로의 대체가 있었음을 인지하였으며,
 - 일부 사업자는 기지국별 발신 전화번호수를 모두 집계(평균 1만건)한 반면, 다른 사업자는 기지국 1개를 전화번호 1건으로 집계하여 보고한 것을 확인하였다.
- ※ 사업자들에 의하면 기지국 수사 허가서와 영장이 절차요청내용이 동일하고, 기지국수사 영장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지국당 1건으로 자체 집계해 온 점을 감안하여 허가서의 경우에도 기지국당 1건으로 집계·보고

□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통비법 규정(방통위 고시 제16조 및 서식 제15호)에 따라 전화번호수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,

※ 위원회 통계집계 기준(제공 문서수.전화번호수)은 '00년 통계발표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음

○ 통신사업자들에게 '기지국 수사 허가서'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협조 건수를 기지국당 1건이 아닌 제공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재집계하여 제출토록 요청하였고

- 이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전화번호 수가 급증한 것이다.

※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'08년 하반기(문서기준 3건)와 '09년 상반기(문서기준 245건)에도 기지국 수사 허가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으나,

- 통비법상 가입자의 통화내역(상대방 전화번호, 통화일시, 발신장소 등) 보관기간 1년이 경과하여, '09년 상반기 이전의 전화번호 수 기준 제공내역을 재집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

□ 만약,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최초 제출했던 기지국당 1건으로 전화번호 수를 집계할 경우

○ '09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전화번호 수는 약 36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 기존 집계 방식 적용 시 통신사실확인자료(전화번호 수) 통계현황 >

구 분		검찰	경찰	국정원	기타	계	(전년동기대비)
기존 방식 (기지국 기준)	'09. 상	59,483	230,333	3,246	11,008	304,070	(45%)
	'09. 하	50,917	292,290	2,727	11,305	357,239	(51%)
	계	110,400	522,623	5,973	22,313	661,309	(48%)

※ '08년 통신사실확인자료 전화번호 수 : 상반기 210,118, 하반기 236,782건

□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전파관리소 인력 등을 활용하여 통신비밀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,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 보호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붙임 : '09년 하반기 통신감청,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. 끝.